

2019. 3. 15. 10:00

제27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19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선정【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지역문화자원과 선비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세마을, 소계정 및 옥연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거점화 및 「선비문화 체험관 조성」으로 인한 관광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달성문화원 증축

- 국비 공모사업(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달성문화원 증축사업
- 노후화된 달성문화원 건물의 증축공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을 새로이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융성 기반 조성

○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 우리 군 관광명소인 하빈면 소재 육신사의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4. 주요내용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 위 치 :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98, 599번지
- 기 간 : 2019. 3. ~ 2020. 12.
- 면 적 : 부지 691㎡, 건축 면적 414.6㎡(건물 2동)
- 주요시설 : 체험공간, 휴게공간, 종합안내실, 전시·도서관, 관리실 등
- 총사업비 : 1,500백만 원(국비 750, 시비 375, 군비 375)
- 활용계획 : 선비문화체험 및 지역관광 콘텐츠 교육·전통문화체험장 등
-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가
사업비 (건축공사비)	1,065 (국비 533, 시비 267, 군비 267)	1,500 (국비 750, 시비 375, 군비 375)	△435 (국비 217, 시비 109, 군비 109)

○ 달성문화원 증축

- 위 치 :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상리 627
- 기 간 : 2019. 1. ~ 2020. 7.
- 면 적 : 부지 10,015㎡ 中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942㎡(예정)
- 사 업 비 : 2,880백만원(국비 1,152, 군비 1,728)

○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 위 치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5번지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대상지 현황

소재지	지 번	면 적(㎡)	지 목	비 고
하빈면 묘 리	635	1,488	대지	달성군에 기부채납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붙임 :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9 (83)	156,636	11,079,578	3 (1)	2,844	12 (84)	159,481 15,573,464
	토지	5 (83)	144,371	5,972,990			5 (83)	144,371 5,972,990
	건물	2	1,857	2,041,588			2	1,857 2,041,588
	2.교환							
처 분	토지				1 (1)	1,488	1 (1)	1,488 193,886
	건물	2	10,408	3,065,000	2	1,356	4	11,765 7,365,000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포. 잡	논공읍 금포리 1305-1	585		585	191,997,000	2019.2.	군청사 세2주차장 확장	서울시 서초구 남원로 4길 28 308/1102 (잠원동, 신원로 8차 이화도)	오창익	2018. 12월 의회 의결
2	선. 잡	논공읍 금포리 1305-2	1,081		1,081	354,784,200					
3 (기타)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4	66		66	36,234,000					
	대. 장	논공읍 금포리 산29-11	187		187	1,589,500					
	대. 장	논공읍 금포리 1307	2,662		2,662	1,126,292,200					
	전. 삼	논공읍 금포리 1425-3	978		978	435,601,200	2019.1. ~ 12.	군청사 세2주차장 태양광발전 시설설치		단상근	2018. 12월 의회 의결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0	66		66	29,396,400					
	전. 잡	논공읍 금포리 1425-21	20		20	8,908,000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3	411		411	172,209,000					
	임. 잡	논공읍 금포리 산29-10	20		20	8,380,000					
	전. 데	논공읍 금포리 1303	780		780	226,200,000					

연번	지 목		제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주 소	성 명	
3 (기타)	대	대	논공읍	1304	873	365,787,000	2019.1. ~ 12.	군청사 제2주차장 네양광발전 시설설치		달성군	2018.12월 의회결
	전	장	논공읍	1308	437	175,499,200					
	장	장	논공읍	1308-3	1,189	498,191,000					
	임	장	논공읍	산34	444	186,036,000					
	전	장	논공읍	1309	571	143,035,500					
	잡	잡	논공읍	1425-23	1	741,000					
	삼	삼	논공읍	2394-22	34	14,246,000					
	보	잡	논공읍	1305-1	585	191,997,000					
	전	잡	논공읍	1305-2	1,081	354,784,200					
4	구	구	유가읍	용리 836	469	3,625,00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18.12월 의회결
5	구	구	유가읍	용리 842	1,924	1,404,000					
6	구	구	유가읍	용리 861	2,764	145,500,000					
7	구	구	유가읍	용리 산185	21,593	847,375,20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지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구	구	유가음	용리	산188	104	104	140,400	2019.5.	비슬관광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18.12월 의회의결
9	구	구	유가음	용리	산189	98	98	132,300					"	
10	답	답	유가음	용리	1	367	367	3,926,900					유가사	
11	잡	잡	유가음	용리	2	160	160	3,552,000					"	
12	답	답	유가음	용리	2-1	861	861	9,212,700					"	
13	답	답	유가음	용리	6	264	264	2,824,800					박일용	
14	답	답	유가음	용리	9	1,044	1,044	12,319,200					"	
15	답	답	유가음	용리	10	152	152	1,626,400					"	
16	답	답	유가음	용리	11	208	208	2,225,600					"	
17	답	답	유가음	용리	12	407	407	4,354,900					"	
18	답	답	유가음	용리	13	162	162	1,733,400					"	
19	답	답	유가음	용리	14	304	304	3,252,800					"	
20	임	임	유가음	용리	18-3	359	359	5,313,200				대구 중구 중앙대로 446-4	안동김씨 익원공파 단성문회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지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1	답	답	유가음	용리	29	2,430	2,430	비슬관광지 조성	달성군 유가음 용리 117	성낙언	2018.12월 의회회결
22	답	답	유가음	용리	29-2	1,139	1,139		경남 창원시 대정로 79 성원1차아파트 113-103	김재선	
23	답	답	유가음	용리	29-3	1,456	1,456		대구 수성구 고산로 162 101동 1501호(메호동 한일유엔아이어)	김상식	
24	답	답	유가음	용리	30	2,089	2,089		달성군 유가음 용리 55	윤태식	
25	답	답	유가음	용리	31	2,618	2,618		대구 달서구 한신크 117 대곡사계절타운 304-1403	조진섭	
26	답	답	유가음	용리	31-1	989	989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6길 3-13	정제인	
27	답	답	유가음	용리	32	1,917	1,917		대구 달서구 싱서서로 316 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남광용	
28	답	답	유가음	용리	33	264	264		경북 고령군 다산면 시몬나루길 10	김외학	
29	답	답	유가음	용리	34	1,428	1,428		경북 고령군 다산면 시몬나루길 10	김외학	
30	답	답	유가음	용리	35	3,074	2,272		대구 수성구 노변공원로 7길 11-6	청주정씨 감정공파 정산중증	
31	답	답	유가음	용리	36	172	172		-	최우춘	
32	답	답	유가음	용리	37	2,407	219		대구 수성구 만촌로 20길 32	이영우외1명	
33	임	임	유가음	용리	산2-2	1,791	1,791		달성군 현풍읍 중리길 33-9	김해김씨 달몽공파 홍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포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4	임	임	유가음	용리	산2-3	198	198	213,840	달성군 현풍읍 종리 133	김혜김씨남 몽공과종중	2018.12월 의회결
35	임	임	유가음	용리	산2-11	192	192	207,360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1 진오힐타워 401호	김영일	
36	임	임	유가음	용리	산2-13	6,200	728	873,600	대구 달서구 상화로, 380, 302동 611호(상인동, 장미아파트)	박성영	
37	임	임	유가음	용리	산2-15	27,128	13,175	14,492,500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0	박소현외2명	
38	임	임	유가음	용리	산2-21	3,969	3,969	10,875,060	달성군 유가읍 노의길 86	손삼출외2명	
39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6	136,860	25,399	16,306,158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신달용외1명	
40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7-2	86	86	92,880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180-20	김동섭	
41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7-3	340	340	421,600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180-20	김동섭	
42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7-4	7,384	7,384	8,565,440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김정원외1명	
43	도	도	유가음	용리	산17-5	173	173	605,500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김성원	
44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7-14	1,753	1,753	2,068,540	대구 남구 명덕로26길 53-3	임은경외1명	
45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8	17,022	1,462	1,207,612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9, 2107동 2001호	배중호	
46	임	임	유가음	용리	산18-4	13,759	6,738	8,355,120	대구 동구 동부로32길 99, 3동 408호(신천동, 효신아파트)	배명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개소)	산출가액(원) (분묘보상에 × 개소)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개소)	주 소					성 명			
47	임	임 유가음	산18-5	용리	3,582	401,184		비슬관광지 조성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1	강남산업 주식회사	2018.12월 호회의결	
48	임	임 유가음	산18-6	용리	1,225	991,025			"	"		"
49	임	임 유가음	산19-1	용리	12,396	9,686,200			대구 중앙대로 446-4	안동김씨의원 공과당성문화		
50 (토지)	답	답 유가음	32	용리	3개소	10,513,350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 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남광용		
	임	임 유가음	산2-21	용리	1개소	3,504,450			달성군 유가음 도의길 86	손삼출외1명		
	임	임 유가음	산17-16	용리	1개소	1,107,790	2019.5.	-	-			
	임	임 유가음	산2-3	용리	1개소	1,107,790		-	-			
	임	임 유가음	산17-1	용리	2개소	2,215,580		-	-			
	임	임 유가음	산16	용리	2개소	2,215,580			-	-		
	임	임 유가음	산17-8	용리	4개소	14,017,800			달성군 구서면 비학마을로2길 6, 화성파곡로 212동 1403호	김성곤		
	임	임 유가음	산17-14	용리	3개소	10,513,350			"	"		

※ 분묘보상액 산정기준 : 2018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2018.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1 (건물)	종교	종교	유가읍	용리 산1-2	2,605	23.04	1,000,000,000	2019.6.	종각·범종	달성군	2018.12월 외회의결	
52 (건물)	종교	종교	유가읍	용리 산1-3	810	1석	400,000,000		일주문	달성군		
53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59	1,640	1,640	538,412,000	2019.1~2.	현풍교통 문화체육 조성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2018.12월 외회의결
54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0	357	357	119,595,000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79	달성군 농회	
55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1	172	172	53,010,4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6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2	542	542	181,57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7	묘	묘	현풍읍	성하리 463-1	109	109	3,270,000			대구 북구 칠성동 404	곽치만	
58	대	대	현풍읍	성하리 463-2	202	202	18,402,2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59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3-3	8,797	8,797	409,060,5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60	묘	묘	현풍읍	성하리 463-4	235	235	7,050,000			경북 구미시 인동 46길 6 부영아파트 603-1201	곽대호	
61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5	783	783	23,020,200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 캐슬골드파크 1115-1202	유창식	
62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8	2,486	2,486	74,58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63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69	2,294	68,820,00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64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0	3,124	93,720,000			달성군 현풍읍 지리	곽상용	
65	임	임	현풍읍	성하리 471	638	16,715,6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66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2	813	23,170,500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손재수 외3명	
67	임	임	현풍읍	성하리 473	1,797	62,895,000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68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3-1	8,634	23,940,000			-	국 (건설부)	
69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4	258	7,353,000	2019.1~2	현풍교통 문화파크 조성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곽영준	2018.12월 의회의원
70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5	258	7,353,000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손재수 외3명	
71	선	선	현풍읍	성하리 476	826	31,476,600			대구 남구 현충로 39길 84	하원호	
72	전	전	현풍읍	성하리 477	36	1,371,600			-	국 (건설부)	
73 (건물)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59	356.44	20,317,080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학교법인 구암학원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0	207.74	11,841,180			"	"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1	108.8	6,201,600			"	"	
	학교	학교	현풍읍	성하리 462	144.37	8,229,09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위)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4	진	전	화원읍 명곡리 36	1,319	686	100,156,000			대구 달서구 상인로 269길 14	박재영	
75	진	전	화원읍 명곡리 37	369	369	53,874,000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길 68	김강현	
76	진	전	화원읍 명곡리 13-1	689	689	100,594,000		화원명곡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및 진입도로조성	대구 서구 구채 보상으로 30길 20 204동 1702호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진명태	2018.12월 의회결
77	진	전	화원읍 명곡리 13-2	1,724	1,724	251,704,000	2019.7.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0길 4	박외갑 외 1	
78	진	전	화원읍 명곡리 14	855	855	124,830,000			대구 서구 국제보상으로 50길 20 204동 1702호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진명태	
79	임	임	화원읍 명곡리 312-1	182,794	2,411	5,545,300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1길 58-7	영동김씨대 구와중외 1	
80	대	대	하빈면 보리 635	1,488	1,488	193,886,400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박종무	
81	대	대	하빈면 보리 636	2,352	2,352	297,528,000	2019.3.	육신사공영 주차장 조성	대구 동구 동부로 34길 64 나동 107호	박진우	2018.12월 의회결
82	대	대	하빈면 보리 636-1	200	200	25,300,000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박종무	
83	답	답	화원읍 본리리 1296-2	59	59	2,938,200		마비정 비화마을 주차장 조성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곽경애	2018.12월 의회결
84 (기타)	임	임	화원읍 본리리 1314	6,883	1,040	1,995,000,000 (건축비)	2019.7.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0-2	34	34	7,310,000	2018.10. ~2019.6. 노동서원 주변정비 (반경)	2018.12월 의회의원	대구 달서구 성당로33길 38	김길봉	
86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1	71	71	14,342,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574	김태욱	
8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2-1	52	52	10,504,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8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2-2	36	36	7,740,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89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	155	155	38,052,48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0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3-1	176	176	35,552,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김영식	
9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2	244	244	52,459,98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2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4-1	27	27	6,142,5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9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5-1	154	154	35,03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김한웅	
94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5-2	267	267	69,153,000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김대식외2명	
95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6-1	166	166	39,923,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9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6-2	96	96	24,240,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97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314	314	167,362,000	2018.10. ~2019.6. 도동서원 주변정비 (변경)	2018.12월 의회소집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9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54-1	979	979	277,057,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99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165	165	72,43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이재철		
100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1,471	1,471	630,323,5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101	임	임	구지면 도동리 58	602	602	87,290,000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김태우		
102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463	463	196,312,000			대구 수성구 신원동로 84길 47	김윤화		
103	임	임	구지면 도동리 60	374	374	46,376,000			대구 수성구 신원동로 84길 47	김윤화		
104	전	전	구지면 도동리 71	107	107	57,833,5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105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189.6	189.6	79,058,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김희석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56	1,261.1	1,261.1	238,593,25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8	김원동의3명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330.2	330.2	69,325,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2-3	김정자의1명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572	572	110,820,000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12	김윤화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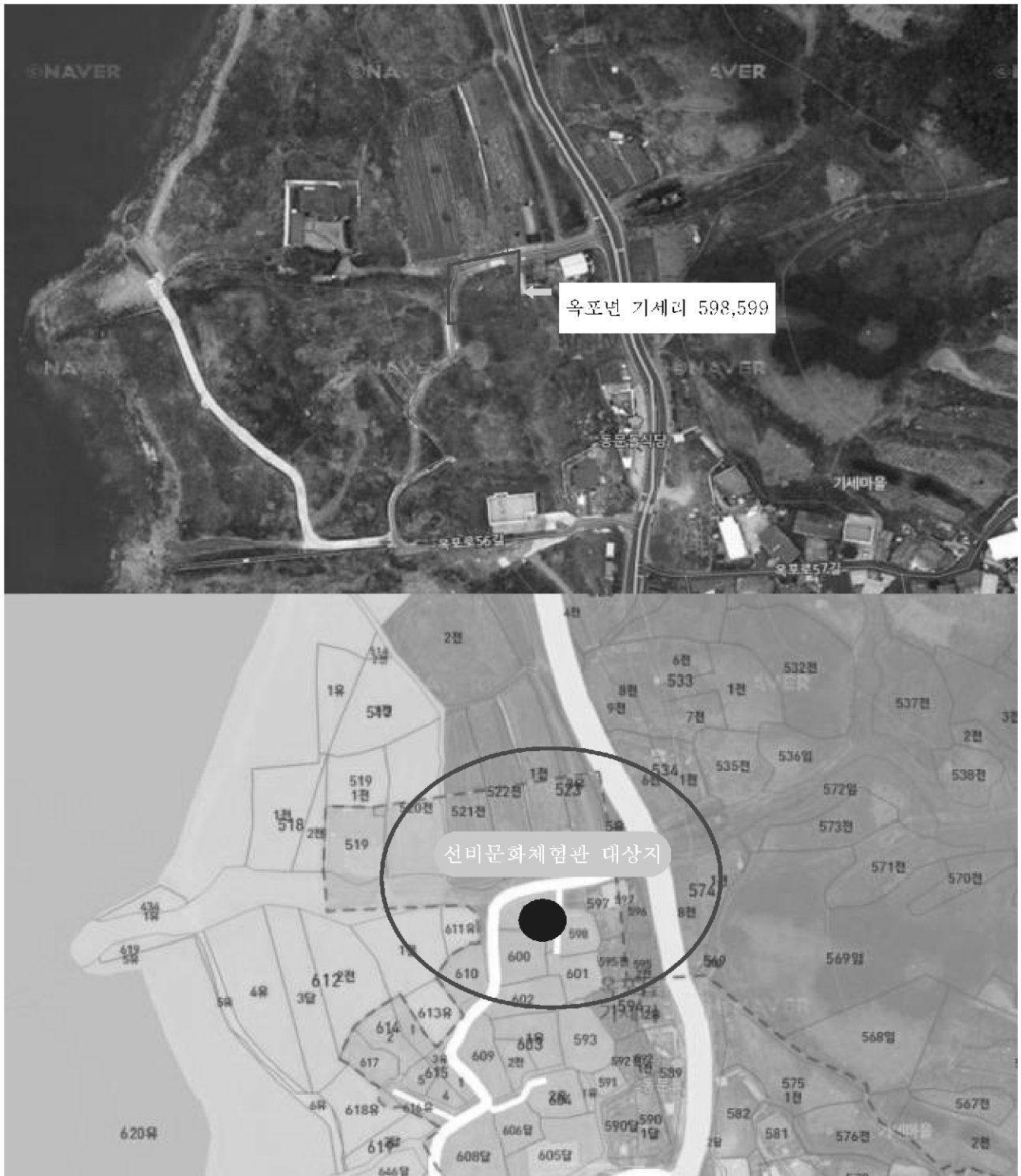
□ 주 가

연번	지 부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소재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계			2,844.6		2,844.6	4,493,886,400					
1 (건물)	대 대	옥포읍 기세리	598, 599		414.6	1,500,000,000 (건축비)	2019	남·경·청 선비문화 체험관 조성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2 (건물)	대 대	현종읍 상리	627		942	2,800,000,000 (건축비)	2019	달성문화원 증축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3 (토지)	대지 대지	하빈면 포리	635		1,488	193,886,400	2019	육신사 공영 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서울특별시 동작구 판양로 8길 50, 106동 601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박종무	기부 채납

위 치 도

【선비문화체험관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598, 599번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달성문화원 증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상리 627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5번지



II. 검토의견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조성(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번 변경 관리계획은 당초 2층으로 건립예정이었으나,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선비예술, 식문화 등을 체험하는 공간과 인문학공연, 선비 배움터 등의 선비정신을 교육하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3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건축비가 10억 6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4억 4천만 원 증액된 것이며,
- 선비문화체험관은 지역관광 콘텐츠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장 등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 거점 및 관광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문화원 증축

- 국비 공모사업(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달성문화원 건물의 증축 공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을 새로이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융성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육신사 공영주차장 토지 기부채납

- 우리 군 관광명소 중 하나인 하빈면 소재 육신사의 공영주차장 조성 기존 사업 대상지와 연결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 및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난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경기침체, 고용감소, 수출둔화 등의 대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총 계		770,300	719,300	51,000
일반회계	계	761,000	710,000	51,000
특별회계	계	9,300	9,30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767	2,767	0
의료급여기금		610	610	0
기반시설		115	115	0
치수사업		5,808	5,808	0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장 관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70,300	719,300	51,000	7.09 %
일 반 회 계		761,000	710,000	51,000	7.18%
	지방세수입	162,698	162,698	0	0.00%
	세외수입	32,951	32,951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4,297	24,29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8,654	8,654	0	0.00%
	지방교부세	137,417	125,500	11,917	9.50%
	조정교부금등	53,231	47,058	6,173	13.12%
	보 조 금	276,280	259,721	16,559	6.38%
	국고보조금등	194,406	181,570	12,836	7.07%
	시·도비보조금등	81,874	78,151	3,723	4.7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422	82,072	16,350	19.92%
특 별 회 계		9,300	9,300	0	0.00 %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70,300	719,300	51,000	7.09 %
일 반 회 계		761,000	710,000	51,000	7.18 %
	일반공공행정	45,361	44,205	1,156	2.62 %
	공공질서및안전	13,043	12,003	1,040	8.66 %
	교육	11,010	10,940	70	0.64 %
	문화및관광	54,179	41,266	12,913	31.29 %
	환경보호	20,875	19,643	1,232	6.27 %
	사회복지	260,933	251,589	9,344	3.71 %
	보건	16,787	16,358	429	2.62 %
	농림해양수산	44,378	42,650	1,728	4.05 %
	산업·중소기업	2,461	2,511	△50	△2.00 %
	수송및교통	129,747	109,352	20,395	18.65 %
	국토및지역개발	51,363	50,728	635	1.25 %
	예비비	19,274	18,790	484	2.58 %
	기타	91,589	89,965	1,624	1.80 %
특 별 회 계		9,300	9,300	0	0.00 %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770,300	719,300	51,000	7.09 %
일 반 회 계		761,000	710,000	51,000	7.18%
	인건비	79,440	79,034	406	0.51%
	물건비	42,341	40,685	1,656	4.07%
	경상이전	355,938	347,132	8,806	2.54%
	자본지출	255,564	217,561	38,003	17.47%
	시설비및부대비	234,198	198,808	35,390	17.80%
	민간자본이전	12,467	10,892	1,575	14.4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16	1,576	△60	△3.8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38	738	0	0.00%
	자산취득비	6,645	5,548	1,097	19.78%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6,779	6,779	0	0.00%
	예비비및기타	20,928	18,799	2,129	11.32%
	예비비	19,274	18,789	485	2.58%
	반환금기타	1,654	10	1,644	16671.42%
특 별 회 계		9,300	9,300	0	0.00 %

5. 주요 내용

□ 예산규모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93억 원보다 510억 원(증 7.09%)이 증가된 7,703억 원입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00억원 보다 510억원이 증액된 7,6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은

재정분석 인센티브,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0억 6,000만 원,

보통교부세 100억 원,

부동산교부세 8억 원등

지방교부세 2018년 정산분 10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교통체계개선 정비사업 등

시 특별조정교부금 62억 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165억 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풍 교통문화파크 부지 조성 80억 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11억 7,000만 원,

달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20억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가창 상원1리 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부지정비 4억 5,000만 원,

구지 1호 공원 축구장 야간조명설치 6억 5,000만 원,

재난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다목적 CCTV 설치 7억 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종합 계획수립 용역,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용역 등에 10억 6,000만 원,

화원 구라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총 20건에 19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7억 4,700만 원,
도로재비산면지 저감사업 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6억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및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87억 8,9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151억 5,200만 원을 반영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19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기정액 (본예산)	경정 조정액	조정액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기획 예산실	○국비공모우수부서국외연수및 신속집행 포상	0	36,000	36,000	
자치 행정과	○안전보건업무등	0	32,512	32,512	산업안전 보건법
회계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0	153,000	153,000	
	○공유재산 관리 관련 시설물 설치 등	0	20,000	20,000	
정보 통신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0	90,000	90,000	
	○다목적 CCTV 설치	0	700,000	700,000	재난안전 특교세
일자리 경제과	○자동차부품 가공을 위한 MCT 전문인력 양성	0	92,667	92,667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청년 3·6·9 일자리지원 프로젝트(필수지원)	0	370,000	370,000	보조사업
	○청년 3·6·9 일자리지원 프로젝트(자율지원)	0	50,000	50,000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0	207,800	207,800	보조사업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자율지원)	0	27,500	27,500	보조사업
환경과	○미세먼지 마스크 및 홍보 물품 구입	0	40,000	40,000	
청소 위생과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123,500	224,200	100,700	특별교부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0	26,500	26,500	산업안전 보건법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0	50,000	50,000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교부세사업)	0	100,000	100,000	보조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0	900,000	900,000	보조사업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기정액 (본예산)	경정 조정액	조정액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원 녹지과	○가로수 관리	119,136	300,000	180,864	
	○가로수 관리	864	2,160	1,296	
	○어린이공원 정비(주거단지 1,2,3,4호)	796,800	916,320	119,520	특별조정교부금
	○어린이공원 정비	3,200	3,680	480	특별조정교부금
	○시설관리공단(비슬산 치유의 숲)경상 전출금	0	183,797	183,797	
	○정대 임도 산팔나무 이식공사	0	180,000	180,000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0	498,000	498,000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0	2,000	2,000	
복지 정책과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	0	354,916	354,916	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624,000	797,000	173,000	보조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100,000	192,704	92,704	보조사업
	○어린이집 확충(공동주택 리모델링)	0	150,000	150,000	보조사업
희망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열차단필름 설치	22,553	30,000	7,447	
	○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174,178	260,000	85,822	
	○장애인복지관 방화셔터 설치	4,384	10,000	5,616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106,386	4,742,504	636,118	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2018년미지급금)	0	403,070	403,070	보조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0	135,000	135,000	보조사업
교통과	○산업단지내 교통체계개선 정비사업	300,000	650,577	350,577	보조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구간단속카메라) 설치(상사업비80천만원)	0	150,000	150,000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기정액 (본예산)	경정 조정액	조정액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건설과	○화원성산1리(마을회관복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소	893,520	1,563,520	670,000	
	○논공삼리리(승호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외2개소	943,160	1,153,160	210,000	
	○다사세천리(세천마을회관옆외2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외8개소	1,891,540	3,151,540	1,260,000	
	○가창옥분리(476번지선) 도시계획도로개설외3개소	100,000	570,000	470,000	
	○하빈감문1리(매낙골) 도시계획도로개설외7개소	550,000	2,120,000	1,570,000	
	○옥포분리2리(대방) 도시계획도로개설외14개소	1,200,000	6,060,000	4,860,000	
	○현풍자모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개설외3개소	944,960	1,794,960	850,000	
	○구지창리(창리초교뒤) 도시계획도로개설외9개소	1,818,776	2,998,776	1,180,000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500,000	1,000,000	500,000	
	○달성1차산업단지(남양금속앞) 인도성비	0	40,000	40,000	
	○다사읍사무소 앞 보도육교 설치	1,495,000	1,895,000	400,000	
	○유가 가태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0	500,000	500,000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0	6,033,516	6,033,516	보조사업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0	16,378	16,378	보조사업
	○가창 우록교 재가설	0	700,000	700,000	
	○현풍 오산1리 138번지선 마을안길정비	0	60,000	60,000	
	○구지 화산리 140-11번지선 도로확포장	0	50,000	50,000	
	○구지 대암리 257번지선 마을안길 확포장	0	50,000	50,000	
	○논공 금포리 1425-12번지선 도로가각정비	0	100,000	100,000	
	○현풍 부리 505-1번지선 인도설치	0	150,000	150,000	
	○현풍2교 보수공사	0	70,000	70,000	
	○구라2교 보수공사	0	20,000	20,000	
	○가창 혈티로 미끄럼방지포장 설 치공사	0	100,000	100,000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기정액 (본예산)	경정 조정액	조정액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도시과	○화원 설화리(520-5번지선) 농로 정비공사	150,000	200,000	50,000	
	○화원 설화1리(1037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280,000	280,000	
	○가창 단산리(206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0	30,000	30,000	
	○현풍 지1리(1322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300,000	300,000	
	○구지 가천리(481번지선) 용수로 및 농로확포장공사	0	30,000	30,000	
	○화원, 옥포지구 한발대비 양수장 운영경비	0	20,000	20,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0	38,000	38,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0	140,000	140,000	
안전 방재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	0	900,000	900,000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0	100,000	100,000	
	○가창 상원1리 상원소하천 정비공사	993,700	993,700	0	특별조정교부금 재원변경
	○가창 상원1리 상원소하천 정비공사	6,300	6,300	0	특별조정교부금 재원변경
	○생태탐방로 운영 및 유지관리	0	30,000	30,000	
	○강정고령보 교통량 조사 용역	0	30,000	30,000	
정책 사업과	○송해선생 기증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0	20,000	20,000	
	○경찰특공대 이전 부지교환	850,000	1,850,000	1,000,000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0	1,170,000	1,170,000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	0	8,000,000	8,000,000	
	○비슬산 관광자원화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0	125,000	125,000	
	○달성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자포함)	0	88,000	88,000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기정액 (본예산)	경정 조정액	조정액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문화 체육과	○비슬산 참꽃 문화제	250,000	290,000	40,000	보조사업
	○달성문화원리모델링공사	0	2,000,000	2,000,000	보조사업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부지정비	450,000	450,000	0	교부세 재원변경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0	1,903,547	0	
	－인력운영비	575,090	98,547	-476,543	
	－기본경비	353,957	0	-353,957	
	－문화기획 지원	0	120,000	120,000	
	－예술자치구역	0	130,000	130,00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사업	0	50,000	50,000	
	－성악중창페스티벌	0	90,000	90,000	
	－달성음악회	0	240,000	240,00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비	75,000	95,000	20,000	
	○구지축구장 (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	0	19,804	19,804	
	○구지1호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0	650,000	650,000	시특별조정 교부금
관광과	○관광지 무인계수기 이전 설치	0	10,000	10,000	
	○중국축구학교 선수단 유치	0	18,000	18,000	
농촌 지도과	○친환경농업단체 시설토양 환경개선 지원	0	150,000	150,000	
	○가창시민농원 조성사업	0	80,000	80,000	보조사업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0	12,000	12,000	보조사업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	0	20,556	20,556	보조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0	123,560	123,560	보조사업
옥포읍	○옥포읍사무소 주차장 정비	0	35,000	35,000	

6.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93억 원 보다 510억 원(증 7.09%)이 증액된 7,703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경기침체, 고용감소, 수출둔화 등에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추경편성입니다.
-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조직개편(2019. 3. 1.)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 하였으며,
- 국,시비 부담분에 대한 군비 확보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꼭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2019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제출된 수정예산 (안)에 대하여는 관련예산 승인 후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 및 확인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 예산편성 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공포, 6. 28.시행)으로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참여로 확대되었고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공무원의 비중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 구성 방식을 공모·추첨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며
- 주민들의 숙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기구(분과위원회 및 읍·면별 지역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2018. 3. 27.공포, 6. 28.시행)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개정(“예산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안 제1조~제5조, 제7조~8조, 제10조)

나.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리고, 구성 방식을 추첨에서 공모·추첨 방법으로 개정(안 제 11조)

다.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17조)

라.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 신설

- 1)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
- 2) 지역회의 기능(안 제21조)
- 3) 지역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안 제22조)

마. 현행 제도 운영과정 보완

-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기능 추가(안 제14조)
- 2)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안 제18조)
-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문 신설(안 제19조)
- 4)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 조항 보완(안 제24조)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6.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1. ~ 2. 21.(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리는 등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 안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
- 안 제19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제3조 중 “예산편성 시”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하고, 제5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예산편성”을 각각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면별 각 1명으로 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예산활동 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에 의한 위원회 활동 배제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군의회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중전의 제17조)중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을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을”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전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이장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없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의 부읍·면장으로 한다.

⑥ 읍·면장은 지역회의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3조(종전의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주민예산학교

제23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회의”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원

제24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 및 지역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u>예산편성 과정</u> 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u>예산편성 시 주민참여</u>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u>대한</u> ----- -----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u>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u> ----- -----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u>예산편성</u> 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신설>	<u>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u>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u>예산편성</u> 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생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②(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견 제출) 군의 <u>예산편성과 관련된</u>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 ————
<신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설치) 군수는 <u>예산편성에</u>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설치)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
제11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u>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내로 한다</u> <u>1. 군수가 추천한 사람</u> <u>2.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u> <u>3.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u>	제1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u> <u>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u> <u>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면별 각 1명)</u> <u>3.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u>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④(생략) <신설> <신설>	④(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생략) <신설>	제14조(기능) ----- 1.~ 3.(현행과 같음) 4.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6.-----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예산활동 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에 의한 위원회 활동 배제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군 의회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u> <u>③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④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u> <u>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⑥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u>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u> _____ _____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을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전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지역회의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이장의 수가 전체 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④ <u>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u> ⑤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의 부읍·면장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u> ⑥ <u>읍·면장은 지역회의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
<신설>	<u>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u> <u>2.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u> <u>3.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u>
<신설>	<u>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u> ①<u>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u> ②<u>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설>	<u>제5장 주민예산학교</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8조</u>(주민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u>위원회</u> <u>위원</u>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u>위원회</u>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제23조</u>(주민예산학교) ① _____ _____위원회 및 <u>지역회의</u> <u>위원</u>_____ ② _____ _____위원회 및 <u>지역회의</u>_____
<신설>	<u>제6장</u> <u>지원</u>
<u>제19조</u>(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u>위원회</u>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u>위원회</u>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u>설명회</u>, <u>공청회</u>, <u>토론회</u>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24조</u>(재정 및 실무지원) ① _____위원회 및 <u>지역회의</u>_____ ② _____위원회 및 <u>지역회의</u>_____ _____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_____ ③ _____
<u>제20조</u>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u>제25조</u> (시행규칙) _____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

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 제4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9조)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정함(안 제13조 ~ 제14조)

5.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4조에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안 제5조 ~ 제6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
- 안 제7조 ~ 제8조에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
- 안 제9조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13조 ~ 제14조에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정하여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정서 함양 도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위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

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2. 건립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건립대상 심의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8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위원 본인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⑤ 군수는 위원이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이는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맞춤형 통합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완료되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면 사무소 명칭 변경 : 면 사무소 ⇨ 면 행정복지센터
 -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추진지침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2. 7. ~ 2. 27.(20일간)
-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맞춤형 통합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완료되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면 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 관련된 9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지면사무소”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달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면명	소 재 지
화원읍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
논공읍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
다사읍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
유가읍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5
옥포읍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15
현풍읍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4길 157
가창면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
하빈면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
구지면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u> <u>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u> <u>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및 <u>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u> <u>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읍·면 행정복지센터</u>----- -----.
제2조(소재지) 달성군청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두고 각 <u>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 ----- ----- <u>읍·면 행정복지센터</u> ----- -----.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추진지침」**3. 추진개요**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대상 및 시행시기

- (대상) 복지허브화 시행 읍면동

- (시행시기) ‘16년 상반기부터 자치단체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폐지사유

-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나, 현재 농공지구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어 있어, 현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 함.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6. 기타사항

- 성별/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1. 30. ~ 2. 19.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 특별회계 설치 이후 별도 세입이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어 조례 존치의 이유 부재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농공지구에 세입이 없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음.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며,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제7조제1항 중 별표1)
 - 기본요금(750 l 까지) : 13,380원 ⇒ 13,530원(1차년도 : 13,450원)
 - 초과요금(100 l 마다) : 1,250원 ⇒ 1,490원(1차년도 : 1,370원)
-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대행 교부금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등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

5. 관계법령

- 「하수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등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물가대책심의 : 원안동의
- 입법예고 : 2019. 1. 30. ~ 2019. 2. 1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7조 제1항 별표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반영
- 안 제9조에 징수대행 교부금 조항, 안 제12조 과태료 징수 조항 삭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2019년 6월 1일부터	기본요금 (0.75㎥까지)	12,700원	750원	13,450원
	초과요금 (매0.1㎥마다)	1,270원	100원	1,370원
2020년 6월 1일부터	기본요금 (0.75㎥까지)	12,780원	750원	13,530원
	초과요금 (매0.1㎥마다)	1,390원	100원	1,49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수수료를 말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징수 대행 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징수대행 납부한 처리 수수료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매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대행 징수한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 할 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과태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기본요금 (0.75㎡까지)	12,630원	750원	13,380원
초과요금 (매0.1㎡마다)	1,150원	100원	1,25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

부과기준		수 수 료		
2019년 6월1일부터	기본요금 (0.75㎡까지)	수집·운반	처리	계
		12,700원	750원	13,450원
2020년 6월1일부터	초과요금 (매0.1㎡마다)	1,270원	100원	1,370원
	기본요금 (0.75㎡까지)	12,780원	750원	13,530원
2021년 6월1일부터	초과요금 (매0.1㎡마다)	1,380원	100원	1,480원
	기본요금 (0.75㎡까지)	12,860원	750원	13,61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징수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처리수수료 징수를 대행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법령상 지원근거 없는 감면 대상 삭제(안 제12조제3항제4호)

현 행	변 경	비 고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법령상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음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제9호)

5.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 . 8 . ~ 1. 28 .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2조제3항제4호 참전유공자 유족한 대한 이용료 감면 삭제
- 안 제12조제3항제9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이
용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 100분의 10 감면 신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참전유공자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 헬스에 한하 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_____ _____ _____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u>참전유공자증 또는</u> <u>참전유공자 유족증</u> 을 소지한 사람	4. _____ _____ <u>참전유공자증</u> _____ _____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u>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u> <u>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u> <u>100분의 10</u>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10. _____ _____ _____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참고 1**관계법령(발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법령상 지원근거 없는 감면대상 삭제(안 제12조제3항제4호)

현 행	변 경	비 고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법령상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음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제9호)

5.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 4. ~ 1. 24.(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달성문화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2조제3항제4호 참전유공자 유족한 대한 이용료 감면 삭제
- 안 제12조제3항제9호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 감면 신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참전유공자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 헬스에 한하 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_____ _____ _____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u>참전유공자증 또는</u> <u>참전유공자 유족증</u> 을 소지한 사람	4. _____ _____ <u>참전유공자증</u> _____ _____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u>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u> <u>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u> <u>100분의 10</u>
<u>9.</u>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u>10.</u> _____ _____ _____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3월 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구지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다른 유료구장 사용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안 별표 1, 체육시설(구지축구장)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안 별표 2, 구지축구장 전용 사용료 상한액 신설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2. 12.~ 2019. 3. 4. (20일간)
- 예고결과 : 2019. 3.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1건)
 - 의견내용 :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중 구지축구장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반대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구지축구장 시설내역 추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상한액을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구지축구장을 추가하였고,
- 안 별표2 사용료 상한액을 체육경기 용도로 평일 이용 시 주간 70,000원, 야간 100,000원, 토·공휴일 이용 시 주간 100,000원, 야간 150,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체육경기 외의 용도로 평일 이용 시 주간 200,000원, 야간 300,000원, 토·공휴일 이용 시 주간 300,000원, 야간 450,000원으로 신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 지 축 구 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츠 파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 성 강 변 야 구 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 용 사 용	체 육 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 목 적 강 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어린이	월 80,000 (주 2회)		-	
			일반	월 60,000 (주 3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가 체 육 공 원	창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사 체 육 공 원	창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 드림 필드 풋살장	주 간 (1시간)	30,000	40,000	90,000	120,000	
		야 간 (1시간)	40,000	60,000	120,000	180,000	
명 체 육 공 원	인 스 케 이 트 장	주·야간	-	-	-	-	
	다 목 적 운 동 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 민 운 동 장		주·야간	-	-	-	-	
논 축 구 장	창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 살 장	주 간 (1시간)	35,000	45,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45,000	55,000	135,000	165,000	
구 지 창 축 구 장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강변야구장	마 사 토 인 조 잔 디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65,000	90,000	150,000	20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달성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주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장외보조경기장	야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장외보조경기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장외보조경기장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다목적체육관	강습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지도강습 (1회 20분)		월 90,000 (주 3회) 월 150,000 (주 3회)		- -
		1일 회원 (2시간)		5,000		-
		개인사용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하빈지구 체육시설	야구장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구장	주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구장	주야간	-	-	-	-
	족구장	주야간	-	-	-	-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80,000			
		1회	20,000			
	실외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30,000			
		1회	15,000			
비 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주요 시설</th></tr><tr><td colspan="3">(생략)</td></tr><tr><td colspan="3">신설</td></tr><tr><td colspan="3">(생략)</td></tr></table>	명칭	위치	주요 시설	(생략)			신설			(생략)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주요 시설</th></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r><td>구지 축구장</td><td>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td><td>- 축구장</td></tr><tr><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table>	명칭	위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구지 축구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현행과 같음)		
명칭	위치	주요 시설																							
(생략)																									
신설																									
(생략)																									
명칭	위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구지 축구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영인	보공휴 일	영인	보공휴 일
(생 략)					
<신 설>					
(생 략)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영인	보공휴 일	영인	보공휴 일	
(현행과 같음)						
구 지 축구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현행과 같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